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1개월 이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근거 신설〉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0.
3. 회부연월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감사원의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한다.</u>
<u>⑦</u>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⑧</u> -----제7항까지의----- ----- ----- ----- -----.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직후보자등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근거하여 주요 직위 인선시 우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²⁾

개정안은 감사원이 국가기관등의 장³⁾에게 피감당사자의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⁴⁾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요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통

- 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현행법 제19조의3제1항).

2)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현행법 제19조의3제4항).

- 4) 개정안은 이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음.

보하도록 구체적인 통보기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련 내용이 인사혁신처에 지체없이 전달되어 추후 주요 직위 인선시 공직후보자등으로서 추천 또는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비위사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등 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은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리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 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장의 직무와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등 감사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사원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권을 행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비위사실에 대한 자료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요구한 경우 이를 1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이행

하도록 피감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⁵⁾ 감사원의 감사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감사원의 통보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피감당사자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피감당사자의 비위사실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자료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 효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 등 피감기관의 장의 조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의 통보 요구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피감당사자의 비위사실에 관한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

5) 감사원이 감사 결과 퇴직한 피감당사자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前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원법」 제34조의2를 들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제3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및 제34조(개선 등의 요구)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고,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현행법 제19조의3의 규율 체계상 해당 사항은 제3항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감사 결과를 직접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인사혁신처는 감사 결과의 확정 및 시행 전에 퇴직하여 처분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피감대상자의 前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5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7항은 정보 수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하위 법령 개정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른 감사자료의 주체가 퇴직자라는 점, 감사원의 조치가 “인사자료 통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상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

7) 의안번호 제2206542호, 채현일의원 대표발의(2024.12.16.)

며, 개정안의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수집하는 인사 관련 자료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인사정보 수집 근거인 제19조의3제3항 후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감사원이 모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비위사실 통보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위사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원이 감사 권한이 없는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까지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개정안은 감사원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비위사실 통보 요구를 한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인사혁신처가 주체가 되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과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신설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후단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합헌적 해석을 위한 제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